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문화체육과)

의안번호	제118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4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의 전부개정(법률 제18547호, 2022. 12. 8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18조)
- 나. 「도서관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(안 제19조~제24조)
- 다. 조례[별표1]에 개관 예정인 ‘오동숲속도서관’ 추가 및 조례[별표2]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 제34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2. 23. ~ 3. 15. (20일간),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전부개정(2022. 12. 8. 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,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조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

- 안 제1조(목적) :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29조 → 제29조 및 제33조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·예술진흥과 정보화,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, 독서진흥,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안 제3조(정의) 제1호 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 → 제3조제2호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다음과 -----.

1.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	1. ----- -란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2호-- -----.
4. “사용료”란 도서관의 <u>시설</u>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.	2. ----- <u>시설</u> ----- -----.
5. (생략)	3. (현행 제5호와 같음)
6. “부대시설”이란 도서관의 <u>세미나실 · 문화교실 · 소강당 · 개인연구실 · 북카페</u> 등을 말한다.	4. ----- <u>세미나실 · 소강당 · 북카페</u> ----- -----.
7. “수강료”란 <u>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</u> 말한다.	<삭 제>

- 제9조제2항제4호 : 만 18세 → 18세 (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)

- 안 제18조 제2항 삭제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

현행	개정안
제18조(<u>자료의 교환 · 이관 · 폐기 및 제적</u>) (조제목 개정 2013. 12. 31)	제18조(<u>자료의 교환 · 이관 · 폐기 및 제적</u>) ① -----
①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<u>있고</u>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 <u>있고</u> , ----- -----
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서울	----- --.
	<삭 제>

<u>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</u>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 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 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 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 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	② -----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 령」을 준용한다. ----- ----- ----- --.
---	--

-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 : 「도서관법」 제 34조제3항1)에 따라
중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
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

현행	개정안
제19조(위원회 설치)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 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다)를 둔다.	제19조(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 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

- 1) 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 ② 공립 공공도서관
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
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문화계 · 교육계 · 도서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삭제

<신 설>
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관내 도서관과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3.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다문화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20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 2명
2.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, 대학교

제20조(수당 등의 지급) 제19조에
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
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
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수, 학교장 등 교육계 전문인사,
문학 작가 등

3.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
주민

4.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 및 독서
문화진흥분야 활동가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23조(수당) 제22조-----

-----.

제21조(위원의 해촉 등) 위원의 해
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
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
례」에 따른다.

제22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
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
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
분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
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
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
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
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<신 설>	④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</u> ⑤ <u>서기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</u> <u>제24조(운영세칙 등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	---

- [별표1]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 : 공공도서관에 2023년 4월 개관 예정인 ‘오동숲속도서관’을 추가하였으며, 작은도서관인 ‘이음도서관’을 ‘성북이음도서관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도서관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의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